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발주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조(계약이행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된 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으로써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변경된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조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①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 1.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수행의무 이행(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 계약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납부하는 방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는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 2.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4.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계약체결 후 연대보증인이 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된 과업의 금액이 변동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발주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업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한다.
-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발주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발주자는 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18조(지연배상금)

-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수행기한내에 계약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계약이행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간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 ⑤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수행기간내에 목적물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행기간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수행기간을 경과하여 목적물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⑥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

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 ① 발주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계약이행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계약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계약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계약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계약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 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1개월 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9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 ⑤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한까지 당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2. 전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②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계약의 일시정지)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계약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계약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상대자의 계약정지 등)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관련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험)

-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계약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계약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 ④ 발주자는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3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제9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제9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분쟁의 해결)

-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계약 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 산출서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 ①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①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 가. 발주자는 과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종사원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교육 등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작업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화재, 기타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류를 지급하고 업무 수행시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및 휴식장소 등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만 작업 및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위를 항상 정리, 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은 차량기지 및 역사의 선로를 무단횡단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용품 및 도구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 투입하여 관계기관의 지적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사. 계약상대자는 당일 업무수행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

- 가.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기 “1” 조 및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또는 이행치 아니하여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도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자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의 위험관리 수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

- 가. 계약상대자는 합의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위험관리 활동 수행을 한다.
-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위험도 평가 및 안전대책등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후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을 식별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라. 계약상대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즉시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는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마. 발주자의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부적합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계약부서 및 분야별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 바. 계약관련부서는 “가” 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위험관리 수행활동이 적합한지 식별하여야 한다.
- 사. 시정조치는 발주자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실행한다.
- 아. 기타 계약상대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회계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안전관리의 지속적 확인

-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철도안전운행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나. 주관 및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수행을 통한 확인 시행의 책임을 가지며 계약부서는 확인 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가진다.
- 다.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상대자, 주관 및 시행부서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통한 확인의 역할 및 책임을 가진다.
-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 확인을 하여야 하며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마. 주관 및 시행부서에서는 보고서와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바.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는 계약상대자, 주관 및 시행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 확인을 시행한다.
- 사. 발주자는 심사, 점검,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을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련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아. 지속적 확인 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행한다.
 - 1)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계약조건 준수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상태 점검 확인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한다.
 - 2) 상시 확인을 통해 식별된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조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3)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부진사항에 대한 확인, 원인분석, 대책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 자. 기타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회계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⑤ 안전관리에 대한 기록과 문서화

- 가. 계약상대자는 위험관리 활동(직원 안전교육 등)에 관한 기록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정리 보관하여 발주자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발주자는 “3-아”에 따른 시정조치 관련 기록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발주자는 “4-아”의 지속적 확인에 대한 관련기록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

-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공사완료 후 1년간 수행한 공사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간 이며 대금 청구 시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공사완료 후 1년 이내 수행한 공사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공사의 보수, 수선 또는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공사의 보수, 수선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보수, 수선공사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